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 1985. 1. 23 조례 제 921호
개정 1996. 3. 1 조례 제 8호(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1999. 4. 3 조례 제 175호
2003. 6. 13 조례 제 449호
2005. 10. 5 조례 제 654호
2008. 3. 3 조례 제 923호
2010. 8. 2 조례 제108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리장의 자녀로서 학교생활의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5. 10. 5, 2008. 3. 3>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선정일 현재 통·리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로서 품행이 단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05. 10. 5, 2008. 3. 3, 2010. 8. 2>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기 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5. 10. 5, 2008. 3. 3, 2010. 8. 2>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소속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8.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리장 정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하되,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자가 통장정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할 때에는 최근연도의 재산세액이 낮은 통·리장의 자녀 순으로 선발한다. <개정 2008. 3. 3, 2010. 8. 2>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해당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육성회비에 한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4. 3>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1. 장학생의 부모인 통·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5. 장학생의 부모인 통·리장이 그 직을 사직한 때

② 읍·면·동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5 조례 제654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3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2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